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3월 2일

군산시 훈령 제405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계급	직렬	합계	직속부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합계
<b>합</b>	<b>계</b>	837	28	12	16		203	47	33	19	31	23	18	14	18					
정무직	계	1					1	1												
차관(급)	소	계	1				1	1												
	정무	계	1				1	1												
일반직	계	830	28	12	16		199	43	33	19	31	23	18	14	18					
3급	소	계	1				1	1												
	행정	계	1				1	1												
4급	소	계	5				1	1												
	행정	계	1				1	1												
	행정·기술	계	4																	
5급	소	계	35	2	1	1	8	1	1	1	1	1	1	1	1					
	행정	계	15	2	1	1	7	1	1	1	1	1	1	1						
	시설	계	1																	
	행정·사회복지	계	4																	
	행정·시설	계	7																	
	행정·방송통신	계	1				1									1				
	행정·공업·환경	계	2																	
	행정·공업·시설	계	1																	
	행정·녹지·시설	계	1																	
	행정·해양수산·시설	계	2																	
	행정·보건·식품위생	계	1																	
6급	소	계	188	6	2	4	44	10	8	4	6	6	3	3	4					
	행정	계	54	4	2	2	20	4	8	3			3	2						
	세무	계	2				2				2									
	전산	계	1				1									1				









계급	직렬	합계	직속부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9급	행정·녹지	2																
	행정·해양수산	2																
	행정·보건	1																
	행정·식품위생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5																
	행정·방송통신	1	1	1														
	보건·식품위생	1																
	식품위생·위생	2																
전문경력관		3																
나군	소계	3																
	전문경력관	3																
별정직		3				3	3											
6급상당	소계	2				2	2											
	별정	2				2	2											
7급상당	소계	1				1	1											
	별정	1				1	1											



계	급	직	렬	경제	소	산	일	새	항	수		문	문	관	도	체	위																							
				계	상	업	자	만	산	화	화	광	시	육	생																									
계	급	직	렬	만	공	인	지	원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6급		사	회	복	지																																			
		공		업								1					1																							
		녹		지																																				
		해	양	수	산	4						4																												
		시			설								2		1	1																								
		시	설	관	리																																			
		운			전																																			
		기	계	운	영																																			
		사	무	운	영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복	지																																
		행	정	·	사	서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녹	지																																		
		행	정	·	해	양	수	산	2					2																										
		행	정	·	환	경																																		
		행	정	·	시	설	5				2	3		6	1		3	2																						
		행	정	·	학	예	연	구						2	2																									
		전	산	·	시	설																																		
		전	산	·	방	송	통	신																																
		공	업	·	환	경																																		
		공	업	·	시	설								2				2																						
		농	업	·	시	설																																		
		녹	지	·	시	설																																		
		보	건	·	식	품	위	생						3					3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행	정	·	전	산	·	방	송	통	신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행	정	·	공	업	·	환	경																															







계	급	직	별	경제	소상	산업	일자	새만	항만	수산	문화	문화	관광	도시	체육	위생					
				향만	공인	혁신	리정	금에	해양	진											
계	급	직	별	향만	공인	혁신	리정	금에	해양	진	관	재	진	흥	정						
9급	행정·녹지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1	1								2	1	1								
	행정·방송통신																				
	보건·식품위생											1				1					
	식품위생·위생											1				1					
전문경력관계											3				3						
나군	소계										3				3						
	전문경력관										3				3						
별정직계																					
6급상당	소계																				
	별정																				
7급상당	소계																				
	별정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계급	직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합	계	183	39	25	33	13	24	25	24	183	34	21	26	27	23	28	24		
정무직		계																	
차관(급)	소	계																	
	정	무																	
일	반	직	계	183	39	25	33	13	24	25	24	183	34	21	26	27	23	28	24
3급	소	계																	
	행	정																	
4급	소	계	1	1						1	1								
	행	정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	계	7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	정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4	1	1	1	1												
	행정·시설									5	1	1		1	1		1		
	행정·방송통신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시설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식품위생																		
6급	소	계	39	6	6	6	4	6	5	6	42	7	5	5	7	5	7	6	
	행	정	1						1		5	1				4			
	세	무																	
	전	산																	

계	급	직	렬	복지	복지	경로	아동	여성	환경	자원	산림	안전	안전	도시	건설	주택	건축	교통	토지		
				환경	정책	장애	청소년	가족	정책	순환	녹지									건설	총괄
6급		사회	복지	2	2																
		공	업																		
		녹	지	2							2										
		해양	수산																		
		시	시설										14		4	2	3	2			3
		시설	관리	1							1										
		운	전																		
		기계	운영																		
		사무	운영										1							1	
		행정	· 세무																		
		행정	· 전산																		
		행정	· 사회복지	18	4	5	5	4													
		행정	· 사서																		
		행정	· 공업	1		1							1			1					
		행정	· 녹지	2								2									
		행정	· 해양수산																		
		행정	· 환경	2						1	1										
		행정	· 시설										16	5	1	1	3	3	1	2	
		행정	· 학예연구																		
		전산	· 시설										1								1
		전산	· 방송통신																		
		공업	· 환경	3						3											
		공업	· 시설										1	1							
		농업	· 시설										1			1					
		녹지	· 시설	2								2									
		보건	· 식품위생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1				
		행정	· 공업 · 환경	2						2											

계	급	직	렬	복지	복지	경로	아동	여성	환경	자원	산림	안전	안전	도시	건설	주택	건축	교통	토지		
				환경	정책	장애	청소년	가족	정책	순환	녹지										
6급		행정·공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식품위생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2											
7급	소	계	50	7	6	8	3	11	8	7		46	9	6	8	7	4	6	6		
	행	정	11		1	3	2	2	2	1		13	3	2	3	1	1	2	1		
	세	무																			
	전	산																			
	사	회	4	2		2															
	공	업	1						1			2		2							
	녹	지	4							4											
	해	양																			
	환	경	6					5	1												
	시	설										24	3	3	3	6	2	2	5		
	방	송										2	2								
	시	설	1							1											
	운	전																			
	기	계	1							1											
	선	박																			
	행	정																			
	행	정											1						1		
	행	정	14	5	5	3	1														
	행	정																			
	행	정	1								1										
행	정																				
행	정																				
행	정	2						1	1												

계	급	직	렬	복	복	경	아	여	환	자	산	안		도	건	주	건	교	토		
				지	지	로	동	성	경	원	림	전	전	시	택	축	통	지			
				환	정	장	청	가	정	순	녹	건	총	계	설	행	경	행	정		
				국	국	애	소	족	책	환	지	설	괄	화	정	관	정	과	과		
				계	과	인	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행	정 · 시	1							1	3	1				1	1			
		행	정 · 학																		
		전	산 · 방																		
		공	업 · 환	4						3	1										
		공	업 · 시																		
		녹	지 · 시										1		1						
		식	품 위	생 · 위																	
		행	정 · 식	품 위																	
		보	건 · 식	품 위																	
		보	건 · 의	료 기																	
		소	계	39	4	7	11	2	3	6	6	52	6	7	7	9	8	9	6		
8급		행	정	5		2	2			1		7			1		1	4	1		
		세	무																		
		전	산										1							1	
		사	회 복	지	6	1	1	4													
		공	업		2					1	1		5			3	2				
		녹	지		4							4									
		해	양 수	산																	
		보	건		1						1										
		환	경		2					1	1										
		시	설		2			1				1	22	1	6	1	4	5	1	4	
		방	송 통	신																	
		방	재 안	전									1	1							
		운	전		2						1	1	3			2			1		
		건	축 운	영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복	지	13	3	4	4	2			1				1				
		행	정 · 사	서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계	급	직	렬	복지	복지	경로	아동	여성	환경	자원	산림	안전	안전	도시	건설	주택	건축	교통	토지						
				환경	정책	장애	청소년	가족	정책	순환	녹지		건설	총괄	계획	행정	경관	행정	정보						
8급		행정·보건																							
		행정·시설										7	1	1		1	2	2							
		세무·전산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방재안전											1	1											
		식품위생·위생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9급	소	계	47	20	5	7	3	3	5	4		35	10	2	5	3	5	5	5						
	행	정	7	2	3	2						1							1						
	세	무																							
	전	산																							
	사	회	복지	1			1																		
	공	업										2	1						1						
	녹	지		2							2														
	해	양	수산																						
	환	경		4					2	2															
	시	설		1						1		19	4	2	3	3	3			4					
	방	송	통신																						
	방	재	안전									2	2												
	시	설	관리									1						1							
	운		전	1			1					1						1							
	전	기	운영									1			1										
	기	계	운영									1	1												
	열	관	운영																						
	사	무	운영									6	1		1				3	1					
	행	정	· 사회복지	24	18		5	1																	
행	정	· 공업									1	1													

계	급	직	별	북	북	경	아	여	환	자	산		안	안	도	건	주	건	교	토		
				지	지	로	동	성	경	원	림	전	전	시	택	축	통	지				
				환	정	장	청	가	정	순	녹		건	총	계	설	택	경	행	정		
				국	책	애	소	족	책	환	지		설	괄	획	과	행	관	정	보		
				계	과	인	년	과	과	과	과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9급	행정 · 녹지			2							2											
	행정 · 해양수산																					
	행정 · 보건			1						1												
	행정 · 식품위생																					
	행정 · 환경			1					1													
	행정 · 시설			2	2																	
	행정 · 방송통신																					
	보건 · 식품위생																					
	식품위생 · 위생			1						1												
전문경력관계																						
나	소계																					
	전문경력관																					
별정직계																						
6급	상당 소계																					
	상당 별정																					
7급	상당 소계																					
	상당 별정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4]

[의회사무국]

계급		직별		합	의회사무국												
				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합		계		31	31	31											
일		반 직		계	31	31											
4급	소	계		1	1	1											
	행	정		1	1	1											
5급	소	계		3	3	3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계		3	3	3										
6급	소	계		7	7	7											
	행		정		2	2	2										
	운		전		1	1	1										
	행 정 · 속 기		계		1	1	1										
	행 정 · 공 업		계		1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계		1	1	1										
	행 정 · 농 업 · 시 설		계		1	1	1										
7급	소	계		13	13	13											
	행		정		2	2	2										
	속		기		1	1	1										
	시		설		1	1	1										
	행 정 · 전 산 · 공 업		계		2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계		1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계		1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계		1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 농 업		계		2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 방 송 통 신		계		2	2	2										
8급	소	계		6	6	6											
	행		정		1	1	1										
	운		전		1	1	1										
	행 정 · 전 산		계		1	1	1										
	행 정 · 공 업		계		1	1	1										
	행 정 · 시 설		계		1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계		1	1	1										
9급	소	계		1	1	1											
	속		기		1	1	1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5]

[읍면동: 읍, 면]

계	급	직	별	합	읍		면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옥	옥		
					구	읍	산	현											
합	계	398		398	14	14	139	13	13	13	13	16	13	13	13	19	13		
일	반	직	계	398	14	14	139	13	13	13	13	16	13	13	13	19	13		
5급	소	계	27	1	1	10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0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1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1	1							
6급	소	계	70	3	3	31	3	3	3	3	3	3	3	3	3	4	3		
	행	정	12																
	사	회	6																

계급	직렬	합계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구	읍																산
6급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2	1	1	8	1	1	1	1	1		1	1		1					
	행정·농업	15	1	1	12	2	2	1	1	1	2	1	1	1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농업·녹지	1			1									1						
	행정·농업·시설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세무·농업·녹지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1	
7급	소계	98	4	4	35	3	2	3	3	6	3	3	3	5	4					
	행정	33	1	1	6	1			1	2	1				1					
	사회복지	32	1	1	11	1	1	1	1	1	1	1	1	2	1					
	해양수산	2			2									2						
	행정·세무	5																		
	행정·사회복지	8																		
	행정·농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행정·녹지	2			2								1	1						
	행정·시설	5	1	1	4	1		1		1										1
8급	소계	86	4	4	26	2	4	2	2	2	2	2	3	4	3					
	행정	36	2	2	7	1	2	1			1	1	1							
	사회복지	16	1	1	4				1	1			1		1					
	해양수산	2			2									2						
	행정·사회복지	18			2								1	1						
	행정·농업	10	1	1	7	1	1	1		1		1		1	1					

계급	직별	합	읍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계	계	구	면	산	현	피	수	야	정	산	포	도	서			
8급	행정·시설	4			4		1		1		1				1			
9급	소계	117	2	2	37	4	3	4	4	4	4	4	3	5	2			
	행정	43	1	1	12	2	1	2	2	1	1	1	1	1				
	사회복지	63	1	1	18	2	2	2	1	3	2	2	1	1	2			
	농업	1			1								1					
	해양수산	2			2										2			
	사무운영	3			3				1		1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해양수산	1			1										1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5]

[읍면동: 동]

계급	직렬	동	해	월	삼	신	중	홍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촌	암	암	정	송	운 1	운 2	운 3	룡	성		
합	계	245	11	13	12	12	11	14	18	13	12	11	24	16	21	21	19	17		
일	반	계	245	11	13	12	12	11	14	18	13	12	24	16	21	21	19	17		
5급	소	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계	2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계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계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계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계	4	1			1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계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계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계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계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계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계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계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계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계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계																		
	행정·공업·농업·시설	계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계																		
	행정·농업·간호·시설	계																		
	행정·농업·환경·시설	계																		
6급	소	계	36	2	2	2	2	2	2	2	2	2	3	2	3	3	3	2		
	행	정	12	1	1	1	1	1	1	1	1		1	1	1					
	사	회	6		1			1		1			1	1	1					

계급	직렬	동	해	월	삼	신	중	홍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촌	암	암	정	송	운	운	운	통	성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6급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농업	2										1							1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세무·농업·녹지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7급	소계	59	3	4	3	3	2	3	4	3	2	2	5	5	5	6	5	4		
	행정	26	2	1	1	2	1	2	1	2	2	1	1	2	1	3	2	2		
	사회복지	20	1	1		1	1		2	1		1	3	3	2	1	2	1		
	해양수산																			
	행정·세무	5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8		2	2			1							1	1		1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시설																			
8급	소계	56	2	3	3	2	2	4	4	2	3	3	5	4	5	5	5	4		
	행정	27	2	1	1	1	2	2	2	1		2	2	2	2	3	3	1		
	사회복지	11		2	2			2	1		1				1	1		1		
	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	16				1			1	1	2	1	2	2	2	1	2	1		
	행정·농업	2											1					1		

계급	직렬	동계	해동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중양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계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8급	행정·시설																			
9급	소계	78	3	3	3	4	4	4	7	5	4	3	10	4	7	6	5	6		
	행정	30	1	2	2	2	1	1	3	1	2	2	4		2	2	2	3		
	사회복지	44	2	1	1	2	3	3	4	4	2	1	5	3	4	3	3	3		
	농업																			
	해양수산																			
	사무운영																			
	행정·사회복지	4												1	1	1	1			
행정·해양수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계급	직	별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문화예술평화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합			105	18	21	19	30	17
일 반 직			102	18	21	19	27	17
7급	소	계	25	6	4	3	4	8
	행	정	12	4	3	1	2	2
행정·복지								
8급	소	계	27	2	10	7	4	4
	행	정	9	1	7	1		
행정·복지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계급	직	별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문화예술평화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합			105	18	21	19	30	17
일 반 직			102	18	21	19	27	17
7급	소	계	25	6	4	3	4	8
	행	정	11	4	2	1	2	2
행정·복지			1		1			
8급	소	계	27	2	10	7	4	4
	행	정	8	1	7			
행정·복지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계급	직	별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합			183	34	21	26	27	23	28	24
일 반 직			183	34	21	26	27	23	28	24
7급	소	계	46	9	6	8	7	4	6	6
	시	설	25	3	4	3	6	2	2	5
복지·시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계급	직	별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합			183	34	21	26	27	23	28	24
일 반 직			183	34	21	26	27	23	28	24
7급	소	계	46	9	6	8	7	4	6	6
	시	설	24	3	3	3	6	2	2	5
복지·시설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4] [의회사무국]

계급	직	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합			31	31
일 반 직			31	31
5급	소	계	3	3
	행	정·별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4] [의회사무국]

계급	직	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합			31	31
일 반 직			31	31
5급	소	계	3	3
	행	정·별		
행정·사회복지·시설			3	3

**현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4] [의회사무국]

[별표4] [의회사무국]

계급	직	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계	의회사무국							
합			31	31							
일반직			31	31							
6급	소계		7	7							
	행정		4	4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속기										
	행정·공업										
	행정·세무·사회복지										
7급	소계		13	13							
	행정		8	8							
	행정·전산·공업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8급	소계		6	6							
	행정		2	2							
	공업		1	1							
	방송통신		1	1							
	행정·공업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계급	직	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계	의회사무국							
합			31	31							
일반직			31	31							
6급	소계		7	7							
	행정		2	2							
	행정·사회복지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7급	소계		13	13							
	행정		2	2							
	행정·전산·공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2	2							
8급	소계		6	6							
	행정		1	1							
	공업										
	방송통신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5] [읍면동 : 읍, 면]

[별표5] [읍면동 : 읍, 면]

계급	직	렬	읍면동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합			139	13	13	13	13	16	13	13	13	19	13	
일반직			139	13	13	13	13	16	13	13	13	19	13	
5급	소계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공업·농업·복지		2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계급	직	렬	읍면동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합			139	13	13	13	13	16	13	13	13	19	13	
일반직			139	13	13	13	13	16	13	13	13	19	13	
5급	소계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공업·농업·복지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3월 2일

군산시 훈령 제406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속기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의회사무국) ① (생략)</p> <p>② <u>계장·전문위원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u></p>	<p>제38조(의회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속기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u> ---.</p>

군산시 공고 제2022-338호

# 공 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 우리시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로 여행사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함에 있어
- 타 지자체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수·지원금 등)에 지급 관련 비교 분석, 현 실정에 맞게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에 기여

##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1호 수정
  - “숙박시설별”을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로 한다.
-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제1항, 제2항 수정
  -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을 변경

## 3. 의견제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전화 : 063-454-3334, 팩스 : 063-454-3329, 전자우편 : [lucky888@korea.kr](mailto:lucky88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 063-454-3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1호 중 “숙박시설별료”을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숙박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인 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별표 2]

## 당일 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5명	5,000원	3,000천원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0명	5,000원	3,000천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1. 시장은 <u>숙박시설별로</u>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 수 있다.  2·3 (생 략)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1. --- <u>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u> --- ----- -----  2·3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숙박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숙박 시설별	지원기준 인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1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외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3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30명	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3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30명	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40명	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40명	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개정안】

[별표 1]

## 숙박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인 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현행】

[별표 2]

## 당일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외국인관광객 (일반인관광객)	80명	3,000원	3,000천원

## 【개정안】

[별표 2]

## 당일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5명	5,000원	3,000천원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0명	5,000원	3,000천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여행사의 인센티브 지원 등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임.

### 4. 작 성 자

작성자	군산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연락처	(063) 454 -3320

군산시 공고 제2022-388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로고가 리뉴얼됨에 따라 올바른 상표사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공동상표 로고변경 [별표 1]
  - 2022년에 특허청 상표권으로 정식 등록되는 로고로 개정
  - 기존 로고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먹거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운회길 32(개정면, 군산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TEL. 063-454-3043, FAX. 063-454-3009, E-mail. [yujins04@korea.kr](mailto:yujins04@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063-454-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동상표”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새들군산』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제2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2. 디자인 설명

가. 새만금의 '새' + 군산의 논과 밭 '들' + 지역명 '군산'

나. '새들' = '때묻지 않은 새로운 땅'

다. '새들' = '새로운 들'

3. Image

가. 시원한 블루계열 컬러가 청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금강의 물줄기 모습을 형상화 한 로고타입으로 청정지역 군산을 부각시켜 신뢰감을 조성

나. 넓고 푸른 '들'과 맑고 깨끗한 '물'이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4. Color

친환경적인 군산의 푸른 이미지를 하늘색과 파랑색으로 표현함

5. 작도방법

표준매뉴얼의 작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최소 사용규정은 가로 14mm로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내용 개정으로 비용 발생 사항 없음.

### 4. 작 성 자

작성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김선주
연락처	063-454-3043

군산시 공고 제2022-389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농특산물 품목 종류를 확장하여 다양하게 새들군산 공동상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공동상표 사용 대상 품목 상세화 [별표 1]
  - “그밖의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추가
- 제3조 명칭변경
  - 이전 명칭인 농산물유통과장을 먹거리정책과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먹거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운회길 32(개정면, 군산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TEL. 063-454-3043, FAX. 063-454-3009, E-mail. [yujins04@korea.kr](mailto:yujins04@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063-454-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시행규칙 제 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중 “**농수산물유통과장**”을 “**먹거리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상품류	세 부 품 목
29류	냉동콩, 냉동된 완두콩, 보존처리한 과일(냉동한 과실은 제외),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양념된 피클, 장아찌, 장아찌(올외를 이용한 것), 절임오이, 보존처리된 렌즈콩, 보존처리된 완두콩,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식용 콩기름, 식용유, 살겨유, 옥수수기름, 참기름, 소금에 절인 배추, 도라지환(丸), 도라지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오가피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잼, 냉동가지,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배추, 냉동버섯, 냉동양파, 냉동오이, 냉동당근, 냉동마늘, 냉동인삼, 건시(곶감) <b>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b>
제30류	감자가루, 도정한 곡물, 보리가루, 식용 감자가루, 식용 걸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울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쌀가루, 옥수수가루, 으깬귀리, 으깬보리, 콩가루, 탈곡한 귀리, 탈곡한 찰흑미, 탈곡한 흰찰쌀보리, 탈곡한 찹쌀, 탈곡한 현미, 탈곡한 보리, 탈곡한 쌀,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굵게 간 옥수수, 메주, 약과, 엿, 전과, 한과,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장(醬)류, 청국장, 식초, 차, 보리차, 도라지차, 울무차 <b>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b>
제30류	강낭콩, 미가공 곡물, 미가공 귀리,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벼, 미가공 보리, 미가공 수수, 미가공 참깨, 벼, 생렌즈콩, 생옥수수, 생완두콩, 생잡두콩, 생콩, 생팥, 땅콩, 생밤, 생포도, 수박, 앵두, 은행, 자두, 잣, 참외, 포도, 호두, 배, 멜론, 단감, 호박, 단호박, 밤호박, 애호박, 샐러드용 치커리, 부추, 상추, 오이, 신선채소, 양파, 치커리뿌리, 시금치, 생버섯, 감자, 생감자, 가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생도라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토마토, 쥐눈이콩(신선한 것), 검은콩(신선한 것), 신선한 과일, 신선한 과일 및 채소 <b>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b>
제32류	감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밀감수, 비알콜성 음료, 포도주스, 포도액, 채소 또는 과일 가공음료,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인삼분말, 비알콜성 과일 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 토마토 주스음료 <b>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b>
제33류	쌀로 빻은 술, 인삼주, 탁주,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식탁용 포도주, 천연발포성 포도주, 포도주, 약용주(藥用酒) <b>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b>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p> <p>①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p> <p>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업축산과장, <b>농수산물유통과장</b>,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p> <p>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p> <p>② (생 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p> <p>①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p> <p>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업축산과장, <b>먹거리정책과장</b>,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p> <p>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p> <p>② (현행과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 미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침부 사유

- 내용 개정으로 비용 발생 사항 없음.

### 4. 작 성 자

작성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김선주
연락처	063-454-3043

군산시 공고 제2022-411호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실태조사) 상위법 적용 조문 변경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3항→제3조4항

## ○ 제10조(위원회 설치)

- 1항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설치 의무
  - ▶ 명칭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 처우개선위원회
  - ▶ 설치 : 임의 설치 → 의무 설치
- 2항 : 타 위원회 수행 가능 조항 신설
  - ▶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3항, 5항 : 위원회의 구성, 회의 관련 조문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17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youn0806@korea.kr
- 팩스 : 063-454-3059

##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전화 063-454-3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공포 후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제3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실태조사) ① ----- ----- -----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제3조제4항-----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u>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 ----- <u>처우개선위원회</u> ----- ----- -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u>」에 따른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부시장, 관계공무원,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p>	<p>&lt;삭 제&gt;</p>
<p>&lt;신 설&gt;</p>	<p>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u>군산</u></p>

④ (생략)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삭제>

#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연락처	(063) 454-3050

군산시 공고 제2022-413호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

- (현 행) 제2조(설치 및 기능)제2항 1호 ~ 6호
- (개정안) 제2조(설치 및 기능)제2항 3호 신설, 1호 ~ 7호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법」 제12조 개정에 따른 신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3항)

- (현 행) 제3조(구성)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호 ~ 4호

- (개정안) 제3조(구성)제3항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호 ~ 4호 삭제

- \* 당연직 위원을 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조건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맞게 개정

○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현 행) 없음

- (개정안)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신설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2를 따른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조항 신설

○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현 행)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 (개정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개정

○ 위원회 사후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현 행) 제9조(우선조치)

- (개정안) 삭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49(2022.01.28.)호 의거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보호조치·퇴소조치 사전심의 의무화)에 반함

○ 일부 문구 수정 및 오류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우) 54078

○ 전 화: 063-454-3244, FAX : 063-454-415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계(☎063-454-3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법률안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구성”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하되, 2회”를 “하며 1회”로,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의”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청취하기”를 “듣기”로 한다.

제12조 중 “차기회의”를 “다음회의”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는 공포후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u>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2. (생략)</p> <p><u>&lt;신 설&gt;</u></p> <p>3. ~ 6. (생략)</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u>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p style="text-align: center;">① &lt;삭 제&gt;</p> <p>제1조(목적) ----- ----- ----- <u>구성</u>----- ----- -----.</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u></p> <p>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선출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u></p>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군산교육지원청 또는 군산고용  
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  
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  
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  
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  
였던 사람
  -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 전  
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  
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삭 제>

① <삭 제>

① <삭 제>

① <삭 제>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  
원은 제2조제2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  
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  
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위원이 제8조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생략)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  
조의2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하며 1회-----  
-----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  
된 위원 ----.

제5조(위원의 해촉)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않아 -----  
-----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를 시작하고-----  
-----.

③ (현행과 같음)

① <삭 제>

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  
-----  
----- 듣거-----  
-----.

제12조(회의록) -----  
----- 다음회의-----  
-----.

제13조(수당 등) -----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경우는 -----.

군산시 공고 제2022-24호

###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 063-454-35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2. 18.

군 산 시 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2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81,806.1	전북고시425 '09.12.31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1,081,806.1	100.0
주거지역	소계	740,280.8	68.4
	제1종일반주거지역	171,807.9	15.9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872.7	9.6
	제3종일반주거지역	448,293.6	41.4
	준주거지역	16,306.6	1.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9,872.7	15.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1,652.6	15.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22	17,447.0	237,052.6	26	6,453.0	79,100.9	64	7,391.5	96,945.1	32	3,602.5	61,006.6
	변경	122	17,447.0	237,082.6	26	6,453.0	79,100.9	64	7,391.5	96,945.1	32	3,602.5	61,036.6
대로	기정	4	4,011.0	66,846.5	1	2,040.0	7,870.0	1	639.0	21,474.5	2	1,332.0	37,502.0
	변경	4	4,011.0	66,876.5	1	2,040.0	7,870.0	1	639.0	21,474.5	2	1,332.0	37,532.0
중로	기정	24	6,479.0	111,129.6	5	2,357.0	50,428.9	11	2,510.0	39,770.0	8	1,612.0	20,930.7
소로	기정	60	5,866.0	52,340.4	14	1,786.0	18,097.0	41	3,981.0	33,603.4	5	99.0	640.0
소로(특)	기정	34	1,091.0	6,736.1	6	270.0	2,705.0	11	261.5	2,097.2	17	559.5	1,933.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	35~41	주간선도로	2,040	조촌동대로1-1	광로2-2 유원지구역계	일반도로		건고228 '86.5.23	
기정	대로	2	26	30	보조간선도로	639	대로1-4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대로	3	38	26	집산도로	685	대로1-4	대로2-2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대로	3	39	26	집산도로	647	중로1-105	대로2-2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변경	대로	3	39	26	집산도로	647	중로1-105	대로2-2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선형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5	20	집산도로	1,052	대로1-4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중로	1	106	20	집산도로	309	대로1-4	대로3-3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1	107	20	집산도로	200	근린공원38호	대로3-3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1	108	20	집산도로	215	대로2-26	중로1-10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1	109	20	집산도로	581	대로2-26	중로1-10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도로	215	대로3-38	중로2-185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2	15	집산도로	253	대로1-4	중로1-10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3	15	집산도로	42	중로1-108	중로3-7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4	15	집산도로	43	대로3-38	중로3-7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5	15	집산도로	42	대로3-38	중로3-8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6	15	집산도로	219	대로2-26	중로1-10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7	15	집산도로	259	대로2-26	중로2-16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8	15	집산도로	211	중로1-109	중로3-8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59	15.5	집산도로	222	대로3-39	중로1-10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60	15.0~15.5	집산도로	250	대로3-39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2	185	15	집산도로	754	대로1-4	중로1-10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중로	3	77	13	집산도로	259	중로1-108	중로1-1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3	78	13	집산도로	58	중로1-108	중로3-7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3	79	13	집산도로	495	소로2-1012	소로2-1012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3	80	13	집산도로	268	중로2-156	중로2-15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3	81	12	집산도로	123	대로3-38	중로2-18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3	82	12	집산도로	103	중로2-157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3	83	12	집산도로	280	중로1-105	소로1-44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중로	3	84	12	집산도로	26	중로1-105	소로1-44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1	440	10	집산도로	189	소로1-447	소로2-99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1	10	집산도로	24	중로2-185	소로1-44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2	10	집산도로	22	중로2-185	소로1-44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3	10	집산도로	85	중로2-185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44	10	집산도로	85	중로2-185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5	10	집산도로	217	중로3-83	소로2-101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6	10	집산도로	313	대로3-39	중로1-105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7	10	국지도로	127	소로3-781	소로2-994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8	10	국지도로	252	소1-443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9	10	국지도로	133	소로1-443	소로1-444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0	10	국지도로	106	중로3-82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1	10	국지도로	106	중로2-160	중로3-82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2	10	국지도로	58	소로1-445	소로2-101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3	10	국지도로	69	중로3-83	소로2-101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88	8	국지도로	105	소로1-440	소로3-782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89	8~9	국지도로	255	소로1-440	소로1-44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0	9	국지도로	67	소로1-440	소로2-98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1	9	국지도로	144	소로1-447	소로2-99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2	9	국지도로	29	소로2-991	소로2-98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3	9	국지도로	29	소로1-440	소로2-991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4	9	국지도로	180	소로1-440	소로1-44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5	8	국지도로	20	중로3-77	소(특)2-103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6	8	국지도로	19	중로3-77	소(특)2-1031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7	8	국지도로	22	중로3-80	소(특)2-1032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8	8	국지도로	22	중로3-80	소(특)2-103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9	8	국지도로	27	중로1-105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1000	8	국지도로	10	중로1-105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1001	9	국지도로	29	소로1-440	소로2-994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1002	9	국지도로	52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3	9	국지도로	52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4	8	국지도로	53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5	8	국지도로	53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06	8	국지도로	53	소로1-449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7	8	국지도로	53	소로1-449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8	8~9	국지도로	425	소로1-444	소로1-44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9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0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1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2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9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3	8	국지도로	234	소로1-452	소로1-44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4	8	국지도로	43	소로1-445	소로2-101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5	8	국지도로	87	소로1-452	소로2-1014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6	8	국지도로	263	중로3-83	소로1-45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7	8	국지도로	170	소로1-453	소로2-101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8	8	국지도로	33	소로2-1017	소로2-101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9	8	국지도로	35	중로3-83	소로2-101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0	8	국지도로	335	중로2-160	중로2-15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1	8	국지도로	106	중로3-82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2	8	국지도로	106	중로2-160	중로3-82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3	8	국지도로	262	소로1-446	소로2-102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4	8	국지도로	71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5	8	국지도로	88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6	8	국지도로	106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7	8	국지도로	123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8	8	국지도로	141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3	781	7	국지도로	8	소로1-447	소(특)3-78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3	782	6	국지도로	16	소로2-98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3	783	6	국지도로	19	소로2-100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3	784	6	국지도로	24	소로2-100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3	785	6	국지도로	32	소로2-102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특	1	454	10	특수도로	42	중로1-106	중로3-7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1	455	10	특수도로	40	중로3-79	36호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6	10	특수도로	39	중로3-79	36호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7	10	특수도로	40	중로3-79	36호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8	10	특수도로	40	대로2-26	중로3-7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9	10	특수도로	69	중로2-156	중로3-80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29	8	특수도로	42	대로1-4	중로2-152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0	8	특수도로	22	중로1-106	소로2-995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1	8	특수도로	24	대로2-26	소로2-99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2	8	특수도로	17	중로1-107	소로2-99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3	8	특수도로	18	대로2-26	소로2-998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4	8	특수도로	25	대로1-4	소로2-98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5	8	특수도로	37	중로2-152	근린공원3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6	8	특수도로	19	중로1-108	소로2-100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7	8	특수도로	19	중로1-108	소로2-1010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8	8	특수도로	19	중로1-106	소로2-101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9	8	특수도로	20	대로2-26	소로2-1012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86	6	특수도로	27	대로1-4	소로2-98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87	7	특수도로	19	대로1-4	소로3-78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88	6	특수도로	24	중로2-185	소로1-44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89	6	특수도로	22	중로2-185	소로1-448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0	6	특수도로	15	대로2-26	소로1-445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1	6	특수도로	15	대로1-4	소로2-1013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2	6	특수도로	19	대로1-4	소로2-101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3	6	특수도로	25	중로1-105	소로2-101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4	6	특수도로	26	중로1-105	소로1-44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5	2.5	특수도로	29	소로2-989	소로2-99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7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3	소로2-1024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특	3	798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4	소로2-1025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9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5	소로2-102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800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6	소로2-102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801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7	소로2-1028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802	2	특수도로	97	중로1-107	내홍동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239'1 6.12.08	
기정	소특	3	803	2	특수도로	92	대로2-26	내홍동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239'1 6.12.0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39	대로3-39	· 선형변경	· B2BL 공동주택용지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선형변경

##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9개소	13,023.5		
기정	95	주차장	내홍동 1027	1,358.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6	주차장	내홍동 912-1	1,794.7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7	주차장	내홍동 1034	1,927.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8	주차장	내홍동 1035	1,930.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9	주차장	내홍동 1044	3,430.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00	주차장	내홍동 1057	515.4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01	주차장	내홍동 1070	550.3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02	주차장	내홍동 989	484.7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1	주차장	내홍동 1007	1,031.6	전북고시425 '09.12.31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1)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4개소	7,204.7		
기정	34	광장	역전광장	내홍동 1049	1,360.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35	광장	경관광장	내홍동 932	1,250.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36	광장	경관광장	내홍동 1037	2,146.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37	광장	경관광장	내홍동 952	2,448.5	전북고시164 '14.06.09	

## (2) 공원(변경없음)

##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9개소	157,741.4		
소계				1개소	13,087.7		
기정	36	역사 공원	역사 공원	내홍동 976	13,087.7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소계				4개소	139,365.4		
기정	37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홍동 1021	52,493.1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기정	38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홍동 1014	13,644.1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기정	39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홍동 1064	12,388.9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기정	40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홍동 1067	60,839.3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소계				1개소	2,500.0		
기정	53	53호 공원	어린이 공원	내홍동 996	2,500.0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소계				3개소	2,788.3		
기정	8	공원	소공원	내홍동 1008	1,031.1	전북고시425 '09.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9	공원	소공원	내홍동 915-1	595.2	전북고시164 '14.06.09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10	공원	소공원	내홍동 1073	1,162.0	전북고시164 '14.06.09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역사공원 36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087.70	-	300.00	600.00	
시설계			4,126.42	-	300.00	600.00	시설율 31.53%
기본시설	소 계		3,078.45	-	-	-	
		도로(소계)	1,920.79	-	-	-	
		광장(소계)	1,157.66	-	-	-	
	1	광장1	101.64	-	-	-	
	2	광장2	859.63	-	-	-	
	3	광장3	196.39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스탠드	-	53.00m	-	-	
	B	조형부조	-	30.40m	-	-	
	C	이야기담장	-	1식	-	-	
	D	앉음벽	-	12.0m	-	-	
휴양시설	소 계		142.88	-	-	-	
	1	휴게소1	142.88	-	-	-	
	E	파고라B	-	1개소	-	-	
	F	파고라D	-	1개소	-	-	
	G	야외테이블A	-	11개소	-	-	
	H	등의자	-	5개소	-	-	
교양시설	소 계		480.09	-	-	-	
	1	전시장1	46.27	-	-	-	
	2	전시장2	143.36	-	-	-	
	3	전시장3	117.24	-	-	-	
	4	전시장4	173.22	-	-	-	
	I	조형물	-	3개소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425.00	-	300.00	600.00	
	J	종합안내판	-	1개소	-	-	
	K	공간안내판	-	5개소	-	-	
	L	방향안내판	-	4개소	-	-	
	M	휴지통	-	1개소	-	-	
	N	관리사무소	425.00	-	300.00	600.00	
녹지계			8,961.28	-	-	-	
녹지및기타	소 계		8,961.28	-	-	-	
		녹 지	8,961.28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920.79	-	-	-
소 로	소 계				1,920.79	-	-	-
	3	진-1	3	9.34	31.42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1 (소)
	3	연-1	4	231.5	1,038.74	연결로	광장1	전시장4
	3	연-2	4	21.38	96.46	연결로	연-3 (소)	연-1 (소)
	3	연-3	4	67.02	277.76	연결로	연-1 (소)	전시장2
	3	연-4	4	38.25	153.27	연결로	전시장2	광장2
	3	연-5	4	46.87	196.24	연결로	광장2	연-1 (소)
	3	관-1	5	25.55	126.9	관리도로	동측경계부	전기공급시설

▶ 근린공원 37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52,493.10	-	75.00	75.00	
시설계			3,764.39	-	75.00	75.00	시설율 7.17%
기본시설	소 계		3,352.40	-	-	-	
		도로(소계)	2,743.18	-	-	-	
		광장(소계)	609.22	-	-	-	
	1	광장	163.87	-	-	-	
	2	광장	53.86	-	-	-	
	3	광장	41.91	-	-	-	
	4	광장	122.51	-	-	-	
	5	광장	144.86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파고라E	-	5개소	-	-	
	B	파고라B	-	1개소	-	-	
	C	파고라D	-	1개소	-	-	
	D	야외테이블B	-	2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219.11	-	-	-	
	1	휴게소1	102.59	-	-	-	
	2	휴게소2	75.76	-	-	-	
	3	휴게소3	40.76	-	-	-	
	E	평의자B	-	15개소	-	-	
	F	등의자	-	18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192.88	-	-	-	
	1	체력단련장1	56.14	-	-	-	
	2	체력단련장2	48.34	-	-	-	
	3	체력단련장3	88.40	-	-	-	
	G	체력단련시설A	-	1개소	-	-	
	H	체력단련시설B	-	1개소	-	-	
	I	체력단련시설C	-	1개소	-	-	
	J	체력단련시설D	-	1개소	-	-	
	K	체력단련시설E	-	1개소	-	-	
	L	체력단련시설F	-	1개소	-	-	
	M	체력단련시설G	-	2개소	-	-	
편익시설	소 계		-	-	75.00	75.00	
	1	주차장	-	-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㉔	화장실	-	1개소	75.00	75.00	
	O	계 단A	-	1개소	-	-	
	P	계 단B	-	1개소	-	-	
	Q	계 단C	-	1개소	-	-	
	R	종합안내판	-	1개소	-	-	
	S	공간안내판	-	3개소	-	-	
	T	방향안내판	-	6개소	-	-	
	U	휴지통	-	3개소	-	-	
녹지계			48,728.71	-	-	-	
녹지및기타	소 계		48,728.71	-	-	-	
		녹 지	48,728.71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2,743.21	-	-	-
소 계					2,743.21	-	-	-
소 로	3	진-1	2	394.75	804.99	진입로	북측경계부	광장1
	3	진-2	3	86.85	315.91	진입로	남측경계부	광장4
	3	진-3	3	69.30	209.12	진입로	남측경계부 (화장실)	광장4
	3	연-1	3	17.66	64.33	연결로	진-3	진-2
	3	연-2	3	20.25	63.07	연결로	광장6	진-3
	3	연-3	3	14.67	47.35	연결로	광장6	진-3
	3	산-1	2	91.89	167.32	산책로	광장3	진-1
	3	산-2	2	148.41	317.11	산책로	진-1	진-1
	3	산-3	2	45.48	94.62	산책로	광장2	산-2
	3	산-4	2	131.41	277.35	산책로	산-2	산-5
	3	산-5	2	149.59	332.77	산책로	광장4	진-1
	3	산-6	2	21.99	49.24	산책로	체력단련장3	산-5

▶ 근린공원 38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644.10	-	-	-	
시설계			5,376.08	-	-	-	시설율 39.40%
기본시설	소 계		3,904.70	-	-	-	
		도로(소계)	1,263.65	-	-	-	
		광장(소계)	2,641.05	-	-	-	
	1	광장1	36.98	-	-	-	
	2	광장2	341.37	-	-	-	
	3	광장3	2,262.70	-	-	-	
휴양시설	소 계		366.03	-	-	-	
	1	휴게소1	55.89	-	-	-	
	2	휴게소2	310.14	-	-	-	
	A	파고라D	-	2개소	-	-	
	B	야외테이블A	-	3개소	-	-	
	C	야외테이블B	-	6개소	-	-	
	D	등의자	-	23개소	-	-	
유희시설	소 계		638.02	-	-	-	
	1	놀이터	638.02	-	-	-	
	E	비단물결 놀이대	-	1개소	-	-	
	F	그네	-	1개소	-	-	
	G	시소	-	2개소	-	-	
	H	별집모래놀이	-	1개소	-	-	
	I	별꽃모래놀이	-	1개소	-	-	
	J	흔들놀이A	-	1개소	-	-	
	K	흔들놀이B	-	1개소	-	-	
L	흔들놀이C	-	1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467.33	-	-	-	
	1	체력단련실	467.33	-	-	-	
	M	배드민턴네트 및 포스트	-	2개소	-	-	
	N	농구대	-	1개소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소 계		-	-	-	-	
	O	종합안내판	-	1개소	-	-	
	P	공간안내판	-	3개소	-	-	
	Q	방향안내판	-	2개소	-	-	
	R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	
	S	휴지통	-	3개소	-	-	
녹지계			8,268.02	-	-	-	
녹지및기타	소 계		8,268.02	-	-	-	
		녹 지	8,268.02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중 점
계					1,263.65	-	-	-
소 로	소 계				1,263.65	-	-	-
	3	진-1	4	186.81	772.56	진입로	광장2	남측경계부
	3	진-2	4	14.41	59.35	진입로	광장1	연-2(소)
	3	연-1	4	51.02	224.59	연결로	광장2	광장3
	3	연-2	2	102.41	207.15	연결로	진-1(소)	진-1(소)

▶ 근린공원 39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2,388.90	-	-	-	
시설계			4,922.62	-	-	-	시설율 39.73%
기반시설	소 계		1,967.94	-	-	-	
		도로(소계)	1,707.25	-	-	-	
		광장(소계)	260.69	-	-	-	
	1	광장1	144.63	-	-	-	
	2	광장2	64.63	-	-	-	
	3	광장3	51.43	-	-	-	
휴양시설	소 계		146.72	-	-	-	
	1	휴게소1	103.50	-	-	-	
	2	휴게소2	43.22	-	-	-	
	A	파고라A	-	1개소	-	-	
	B	파고라D	-	2개소	-	-	
	C	야외테이블A	-	3개소	-	-	
	D	등의자	-	29개소	-	-	
유희시설	소 계		239.74	-	-	-	
	1	놀이터	239.74	-	-	-	
	E	숫대놀이대	-	1개소	-	-	
	F	인디언놀이집	-	1개소	-	-	
	G	통나무그네	-	1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68.22	-	-	-	
	1	체력단련실	68.22	-	-	-	
	H	체력단련시설A	-	1개소	-	-	
	I	체력단련시설B	-	1개소	-	-	
	J	체력단련시설C	-	1개소	-	-	
교양시설	소 계		2,500.00	-	-	-	
	1	도서관	2,500.00	-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	-	-	-	
	K	종합안내판	-	1개소	-	-	
	L	공간안내판	-	2개소	-	-	
	M	방향안내판	-	3개소	-	-	
	N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	
	S	휴지통	-	2개소	-	-	
녹지계			7,466.28	-	-	-	
녹지및기타	소 계		7,466.28	-	-	-	
		녹 지	7,466.28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707.25	-	-	-
소로	소 계				1,707.25	-	-	-
	3	진-1	3	4.99	20.85	진입로	남측경계부	연-1(소)
	3	진-2	3	8.92	31.07	진입로	남측경계부	연-1(소)
	3	진-3	4	23.45	191.00	진입로	광장2	연-1(소)
	3	진-4	3	114.64	81.80	진입로	연-1(소)	연-2(소)
	3	진-5	3	14.42	71.59	진입로	연-1(소)	연-2(소)
	3	진-6	2	16.07	32.14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2(소)
	3	연-1	3	290.69	877.32	연결로	광장1	광장3
	3	연-2	4	95.61	351.86	연결로	진-6(소)	놀이터
	3	연-3	2	18.62	37.23	연결로	연-2(소)	휴게소1
	3	연-4	2	6.15	12.23	연결로	휴게소1	연-1(소)

## ▶ 근린공원 40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60,839.30	-	-	-	
시설계			2,790.99	-	-	-	시설율 4.59%
기반시설	소 계		2,301.15	-	-	-	
		도로(소계)	1,989.66	-	-	-	
		광장(소계)	311.49	-	-	-	
	1	광장1	240.54	-	-	-	
	2	광장2	70.95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파고라C	-	1개소	-	-	
	B	파고라E	-	2개소	-	-	
	C	야외테이블B	-	2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92.44	-	-	-	
	1	휴게소1	92.44	-	-	-	
	D	등의자	-	19개소	-	-	
	E	평의자A	-	1개소	-	-	
	F	평의자B	-	9개소	-	-	
	G	평상	-	6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383.89	-	-	-	
	1	체력단련장1	136.73	-	-	-	
	2	체력단련장2	247.16	-	-	-	
	H	체력단련시설A	-	1개소	-	-	
	I	체력단련시설B	-	1개소	-	-	
	J	체력단련시설C	-	1개소	-	-	
	K	체력단련시설D	-	1개소	-	-	
	L	체력단련시설E	-	1개소	-	-	
	M	체력단련시설F	-	1개소	-	-	
	N	체력단련시설G	-	1개소	-	-	
교양시설	소 계		13.51	-	-	-	
	1	숲속학습장	13.51	-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	-	-	-	
	O	계단D	-	1개소	-	-	
	P	계단E	-	1개소	-	-	
	Q	종합안내판	-	1개소	-	-	
	R	공간안내판	-	4개소	-	-	
	S	방향안내판	-	4개소	-	-	
	T	휴지통	-	2개소	-	-	
녹지계			58,048.31	-	-	-	
녹지및기타	소 계		58,048.31	-	-	-	
		녹 지	58,048.31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중 점
계					1,989.66	-	-	-
소 로	소 계				1,989.66	-	-	-
	3	산-1	2	448.47	902.24	산책로	광장2	북측경계부
	3	산-2	2	117.91	250.68	산책로	광장1	산-1(소)
	3	산-3	2	107.42	219.51	산책로	남측경계부	산-7(소)
	3	산-4	1.5	87.58	142.90	산책로	산-1(소)	산-1(소)
	3	산-5	1.5	57.68	96.03	산책로	산-1(소)	산-4(소)
	3	산-6	1.5	53.24	89.17	산책로	산-1(소)	체력단련장1
	3	산-7	2	131.30	289.13	산책로	산-1(소) (숲속학습장)	산-1(소)

## ▶ 어린이공원 53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2,500.00	-	-	-	
시설계			1,301.51	-	-	-	시설율52.06%
기반시설	소 계		701.64	-	-	-	
		도로(소계)	489.65	-	-	-	
		광장(소계)	211.99	-	-	-	
	1	광장1	211.99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앉음벽	-	1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42.15	-	-	-	
	1	휴게소1	42.15	-	-	-	
	B	원형파고라	-	7개소	-	-	
	C	야외테이블A	-	4개소	-	-	
	D	등의자	-	4개소	-	-	
	E	통나무의자	-	5개소	-	-	
유희시설	소 계		557.72	-	-	-	
	1	어린이놀이터	503.96	-	-	-	
	2	모래놀이장	53.76	-	-	-	
	F	스텝놀이시설	-	1개소	-	-	
	G	구불구불놀이대	-	1개소	-	-	
	H	경사슬라이드	-	1개소	-	-	
	I	언던네트오르기	-	1개소	-	-	
	J	마운딩흔들다리건너기	-	1개소	-	-	
	K	튜브터널통과하기	-	1개소	-	-	
	L	암벽오르기	-	1개소	-	-	
	M	마운딩통과하기	-	1개소	-	-	
	N	모래놀이집	-	1개소	-	-	
관리시설	소 계		-	-	-	-	
	O	종합안내판	-	1개소	-	-	
	P	공간안내판	-	3개소	-	-	
	Q	방향안내판	-	2개소	-	-	
	R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	
	S	휴지통	-	1개소	-	-	
녹지계			1,198.49	-	-	-	
녹지및기타	소 계		1,198.49	-	-	-	
		녹 지	1,198.49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489.65	-	-	-
소로	소 계				489.65	-	-	-
	3	진-1	3	150.92	31.06	진입로	좌측경계부	연-1(소)
	3	연-1	2	15.91	458.05	연결로	-	-

▶ 소공원 8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31.10	-	-	-	
시설계			204.97	-	-	-	시설율 19.88%
기반시설	소 계		144.82	-	-	-	
		도로(소계)	144.82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파고라D	-	1개소	-	-	
	B	디딤석포장B	-	23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36.00	-	-	-	
	1	가로쉼터	36.00	-	-	-	
운동시설	소 계		24.15	-	-	-	
	2	체력단련장	24.15	-	-	-	
	C	체력단련시설D	-	1개소	-	-	
	D	체력단련시설E	-	1개소	-	-	
녹지계			826.13	-	-	-	
녹지및기타	소 계		826.13	-	-	-	
		녹 지	826.13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44.82	-	-	-
소 로	소 계				144.82	-	-	-
	3	진-1	1.5	20.87	36.57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1(소)
	3	연-1	2.0	40.97	108.25	연결로	북측경계부	남측경계부

▶ 소공원 9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595.20	-	-	-	
시설계			118.20	-	-	-	시설율19.86%
기반시설	소 계		118.20	-	-	-	
		도로(소계)	118.20	-	-	-	
		광장(소계)	-	-	-	-	
조경시설	소 계		-	-	-	-	
	1-1	조형가벽A	-	1개소	-	-	
	1-2	조형가벽B	-	1개소	-	-	
	1-3	조형가벽C	-	1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	-	-	-	
	2-1	등의자	-	4개소	-	-	
녹지계			477.00	-	-	-	
녹지및기타	소 계		477.00	-	-	-	
		녹 지	477.00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18.20	-	-	-
소 로	소 계				118.20	-	-	-
	3	진-1	2.0	21.26	45.20	진입로	서측경계부	동측경계부
	3	진-2	1.5	23.53	40.00	진입로	서측경계부	동측경계부
	3	연-1	2.0	15.20	33.00	연결로	진-1(소)	진-2(소)

▶ 소공원 10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162.00	-	-	-	
시설계			189.11	-	-	-	시설율16.27%
기반시설	소 계		129.34	-	-	-	
		도로(소계)	129.34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과고라D	-	1개소	-	-	
	B	디딤석포장B	-	32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20.24	-	-	-	
	1	가로쉼터	20.24	-	-	-	
운동시설	소계		39.53	-	-	-	
	2	체력단련장	39.53	-	-	-	
	C	체력단련시설F	-	1개소	-	-	
	D	체력단련시설G	-	1개소	-	-	
	E	체력단련시설H	-	1개소	-	-	
녹지계			972.89	-	-	-	
녹지및기타	소 계		972.89	-	-	-	
		녹 지	972.89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25.34	-	-	-
소 로	소 계				125.34	-	-	-
	3	진-1	1.5	15.77	40.35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1(소)
	3	연-1	2.0	39.40	88.99	연결로	북측경계부	남측경계부

## (3)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2개소	64,365.3		
기정	119	녹지	연결녹지	내홍동 967	4,810.2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0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95	13,090.6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1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79	1,107.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2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86	689.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3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20	4,361.4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4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12	2,781.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5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92	235.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6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3	1,701.3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7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62	1,089.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8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4	2,790.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9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97	798.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0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51	11,821.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1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61	1,048.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2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83	850.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3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79	5,757.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4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13	2,059.8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5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75	1,599.2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6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1	1,915.1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7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6	1,453.5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8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54	1,489.9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9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56	2,372.6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40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63	541.6	전북고시164 '14.06.09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8개소	12,974.5		
기정	15	공공공지	내홍동 1022	216.4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6	공공공지	내홍동 931	159.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7	공공공지	내홍동 933	220.2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8	공공공지	내홍동 1024	175.6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9	공공공지	내홍동 999-1	290.9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20	공공공지	내홍동 1084 일원	6,088.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1	공공공지	내홍동 970 일원	5,322.3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2	공공공지	내홍동 964	500.4	전북고시425 '09.12.31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400.0		
기정	17	전기공급시설	내홍동 977	400.0	전북고시425 '09.12.31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고시일	비고
합계				4개소	42,574.6		
기정	10	학교	유치원	내홍동 1059	5,000.8	전북고425 '09.12.31	
기정	17	학교	초등학교	내홍동 998	9,401.0	군교공3 '88.3.5	
기정	15	학교	초등학교	내홍동 1063	15,001.6	전북고425 '09.12.31	
기정	9	학교	중학교	내홍동 1060	13,171.2	전북고425 '09.12.31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4개소	9,921.2		
기정	22	공공청사	보건소	내홍동 1016-2	3,021.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3	공공청사	우체국	내홍동 1015-2	1,103.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4	공공청사	소방 파출소	내홍동 1016-1	3,794.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5	공공청사	파출소	내홍동 1015-1	2,001.0	전북고시425 '09.12.31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하수도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699.5		
변경	4	오수 펌프장	내홍동 923	699.5	전북고시425 '09.12.31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73,994.8	-	-	73,994.8	
E	1	1,785.0	-1	내홍동 980-1	255.0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홍동 980-2	255.0	
			-3	내홍동 980-3	255.0	
			-4	내홍동 980-4	255.0	
			-5	내홍동 980-5	255.0	
			-6	내홍동 980-6	255.0	
			-7	내홍동 980-7	255.0	
E	2	1,855.3	-1	내홍동 981-1	227.2	
			-2	내홍동 981-2	241.1	
			-3	내홍동 981-3	241.0	
			-4	내홍동 981-4	235.5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5	내홍동 981-5	226.4	
			-6	내홍동 981-6	232.4	
			-7	내홍동 981-7	232.5	
			-8	내홍동 981-8	219.2	
E	3	2,103.2	-1	내홍동 985-1	257.3	
			-2	내홍동 985-8	270.1	
			-3	내홍동 985-7	270.0	
			-4	내홍동 985-6	255.5	
			-5	내홍동 985-5	254.8	
			-6	내홍동 985-4	269.5	
			-7	내홍동 985-3	269.3	
			-8	내홍동 985-2	256.7	
E	4	2,140.8	-1	내홍동 984-1	256.9	
			-2	내홍동 984-8	270.1	
			-3	내홍동 984-7	270.0	
			-4	내홍동 984-6	255.8	
			-5	내홍동 984-5	264.6	
			-6	내홍동 984-4	278.8	
			-7	내홍동 984-3	278.9	
			-8	내홍동 984-2	265.7	
E	5	2,103.1	-1	내홍동 983-1	265.8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홍동 983-8	279.4	
			-3	내홍동 983-3	260.4	
			-4	내홍동 983-2	246.2	
			-5	내홍동 983-7	278.8	
			-6	내홍동 983-6	264.4	
			-7	내홍동 983-5	247.4	
			-8	내홍동 983-4	260.7	
E	6	1,001.0	-1	내홍동 987-1	252.0	
			-2	내홍동 987-2	252.0	
			-3	내홍동 987-3	252.0	
			-4	내홍동 987-4	245.0	
E	7	1,112.1	-1	내홍동 988-1	271.4	
			-2	내홍동 988-4	284.7	
			-3	내홍동 988-3	284.6	
			-4	내홍동 988-2	271.4	
E	8	1,699.7	-1	내홍동 990-1	272.0	
			-2	내홍동 990-6	285.5	
			-3	내홍동 990-5	278.7	
			-4	내홍동 990-4	287.5	
			-5	내홍동 990-3	294.7	
			-6	내홍동 990-2	281.3	
E	9	1,672.4	-1	내홍동 991-1	282.4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2	내홍동 991-6	295.3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3	내홍동 991-5	288.5	
			-4	내홍동 991-4	268.4	
			-5	내홍동 991-3	275.2	
			-6	내홍동 991-2	262.6	
E	10	1,304.7	-1	내홍동 1003-1	425.8	
			-2	내홍동 1003-2	430.3	
			-3	내홍동 1003-3	448.6	
E	11	1,901.7	-1	내홍동 1004-1	238.8	
			-2	내홍동 1004-2	245.2	
			-3	내홍동 1004-3	244.8	
			-4	내홍동 1004-4	220.7	
			-5	내홍동 1004-5	221.5	
			-6	내홍동 1004-6	245.6	
			-7	내홍동 1004-7	245.8	
E	12	2,119.0	-1	내홍동 1005-1	263.5	
			-2	내홍동 1005-2	270.1	
			-3	내홍동 1005-3	269.9	
			-4	내홍동 1005-4	243.8	
			-5	내홍동 1005-5	249.6	
			-6	내홍동 1005-6	276.2	
			-7	내홍동 1005-7	276.3	
			-8	내홍동 1005-8	269.6	
E	13	2,088.3	-1	내홍동 1006-1	258.1	
			-2	내홍동 1006-2	264.5	
			-3	내홍동 1006-3	264.3	
			-4	내홍동 1006-4	257.8	
			-5	내홍동 1006-5	257.3	
			-6	내홍동 1006-6	264.0	
			-7	내홍동 1006-7	264.3	
			-8	내홍동 1006-8	258.0	
E	14	2,001.3	-1	내홍동 1009-1	246.7	
			-2	내홍동 1009-2	253.2	
			-3	내홍동 1009-3	253.2	
			-4	내홍동 1009-4	247.3	
			-5	내홍동 1009-5	247.3	
			-6	내홍동 1009-6	253.2	
			-7	내홍동 1009-7	253.4	
			-8	내홍동 1009-8	247.0	
E	15	2,040.4	-1	내홍동 1010-1	252.0	
			-2	내홍동 1010-2	258.5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3	내홍동 1010-3	258.3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4	내홍동 1010-4	252.0	
			-5	내홍동 1010-5	251.5	
			-6	내홍동 1010-6	257.9	
			-7	내홍동 1010-7	258.3	
			-8	내홍동 1010-8	251.9	
E	16	2,039.3	-1	내홍동 1011-1	251.9	
			-2	내홍동 1011-2	258.5	
			-3	내홍동 1011-3	258.5	
			-4	내홍동 1011-4	252.1	
			-5	내홍동 1011-5	251.1	
			-6	내홍동 1011-6	257.7	
			-7	내홍동 1011-7	258.0	
			-8	내홍동 1011-8	251.5	
E	17	3,287.5	-1	내홍동 914-1	264.7	
			-2	내홍동 914-10	303.5	
			-3	내홍동 914-9	356.3	
			-4	내홍동 914-8	374.0	
			-5	내홍동 914-7	351.3	
			-6	내홍동 914-6	332.8	
			-7	내홍동 914-5	354.1	
			-8	내홍동 914-4	344.9	
			-9	내홍동 914-3	301.5	
			-10	내홍동 914-2	304.4	
E	18	1,760.0	-1	내홍동 915-7	278.5	
			-2	내홍동 915-6	305.2	
			-3	내홍동 915-5	312.5	
			-4	내홍동 915-4	294.3	
			-5	내홍동 915-3	291.3	
			-6	내홍동 915-2	278.2	
E	19	1,276.1	-1	내홍동 916-1	248.1	
			-2	내홍동 916-2	260.4	
			-3	내홍동 916-3	260.1	
			-4	내홍동 916-4	260.0	
			-5	내홍동 916-5	247.5	
E	20	2,479.1	-1	내홍동 918-1	272.0	
			-2	내홍동 918-8	313.2	
			-3	내홍동 918-7	327.5	
			-4	내홍동 918-6	325.1	
			-5	내홍동 918-5	322.5	
			-6	내홍동 918-4	320.7	
			-7	내홍동 918-3	312.4	
			-8	내홍동 918-2	285.7	
E	21	2,781.8	-1	내홍동 919-1	274.2	
			-2	내홍동 919-10	280.7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3	내홍동 919-9	280.7					
			-4	내홍동 919-8	280.6					
			-5	내홍동 919-7	274.1					
			-6	내홍동 919-6	274.6					
			-7	내홍동 919-5	280.8					
			-8	내홍동 919-4	280.9					
			-9	내홍동 919-3	280.9					
			-10	내홍동 919-2	274.3					
			E	22	2,729.2		-1	내홍동 920-1	252.5	
							-2	내홍동 920-10	264.4	
-3	내홍동 920-9	269.8								
-4	내홍동 920-8	275.0								
-5	내홍동 920-7	273.9								
-6	내홍동 920-6	275.2								
-7	내홍동 920-5	281.4								
-8	내홍동 920-4	281.3								
-9	내홍동 920-3	281.0								
-10	내홍동 920-2	274.7								
E	23	2,782.4	-1	내홍동 921-1	275.5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홍동 921-10	280.9					
			-3	내홍동 921-9	280.7					
			-4	내홍동 921-8	280.9					
			-5	내홍동 921-7	274.1					
			-6	내홍동 921-6	273.9					
			-7	내홍동 921-5	280.7					
			-8	내홍동 921-4	280.5					
			-9	내홍동 921-3	280.5					
			-10	내홍동 921-2	274.7					
E	24	1,424.1	-1	내홍동 922-1	286.7					
			-2	내홍동 922-2	285.9					
			-3	내홍동 922-3	286.1					
			-4	내홍동 922-4	286.2					
			-5	내홍동 922-5	279.2					
E	25	3,160.4	-1	내홍동 1053-1	259.2					
			-2	내홍동 1053-12	265.4					
			-3	내홍동 1053-11	265.5					
			-4	내홍동 1053-10	265.6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5	내흥동 1053-9	265.6	
			-6	내흥동 1053-8	259.4	
			-7	내흥동 1053-7	259.3	
			-8	내흥동 1053-6	265.2	
			-9	내흥동 1053-5	265.2	
			-10	내흥동 1053-4	265.3	
			-11	내흥동 1053-3	265.4	
			-12	내흥동 1053-2	259.3	
E	26	3,164.3	-1	내흥동 1054-1	259.3	
			-2	내흥동 1054-12	265.6	
			-3	내흥동 1054-11	265.6	
			-4	내흥동 1054-10	265.6	
			-5	내흥동 1054-9	265.7	
			-6	내흥동 1054-8	259.8	
			-7	내흥동 1054-7	259.8	
			-8	내흥동 1054-6	265.9	
			-9	내흥동 1054-5	265.9	
			-10	내흥동 1054-4	265.8	
			-11	내흥동 1054-3	265.7	
			-12	내흥동 1054-2	259.6	
E	27	3,159.5	-1	내흥동 1056-1	258.9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흥동 1056-12	265.1	
			-3	내흥동 1056-11	265.4	
			-4	내흥동 1056-10	265.6	
			-5	내흥동 1056-9	265.6	
			-6	내흥동 1056-8	259.5	
			-7	내흥동 1056-7	258.8	
			-8	내흥동 1056-6	265.2	
			-9	내흥동 1056-5	265.2	
			-10	내흥동 1056-4	265.4	
			-11	내흥동 1056-3	265.6	
			-12	내흥동 1056-2	259.2	
E	28	3,159.1	-1	내흥동 1055-1	259.0	
			-2	내흥동 1055-12	265.2	
			-3	내흥동 1055-11	265.2	
			-4	내흥동 1055-10	265.3	
			-5	내흥동 1055-9	265.5	
			-6	내흥동 1055-8	259.3	
			-7	내흥동 1055-7	258.9	
			-8	내흥동 1055-6	265.2	
			-9	내흥동 1055-5	265.4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10	내홍동 1055-4	265.4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11	내홍동 1055-3	265.5	
			-12	내홍동 1055-2	259.2	
E	29	1,250.3	-1	내홍동 1069-1	293.6	
			-2	내홍동 1069-4	283.0	
			-3	내홍동 1069-3	283.0	
			-4	내홍동 1069-2	390.7	
E	30	1,204.2	-1	내홍동 1071-1	276.9	
			-2	내홍동 1071-4	276.0	
			-3	내홍동 1071-3	276.0	
			-4	내홍동 1071-2	375.3	
E	31	1,119.8	-1	내홍동 1072-1	282.9	
			-2	내홍동 1072-4	277.0	
			-3	내홍동 1072-3	277.0	
			-4	내홍동 1072-2	282.9	
E	32	1,686.4	-1	내홍동 1074-1	283.0	
			-2	내홍동 1074-6	283.0	
			-3	내홍동 1074-5	277.2	
			-4	내홍동 1074-4	277.2	
			-5	내홍동 1074-3	283.0	
			-6	내홍동 1074-2	283.0	
E	33	1,678.3	-1	내홍동 1075-1	250.4	
			-2	내홍동 1075-6	271.0	
			-3	내홍동 1075-5	271.0	
			-4	내홍동 1075-4	271.0	
			-5	내홍동 1075-3	271.0	
			-6	내홍동 1075-2	343.9	
E	34	1,686.0	-1	내홍동 1076-1	283.0	
			-2	내홍동 1076-6	283.0	
			-3	내홍동 1076-5	277.0	
			-4	내홍동 1076-4	277.0	
			-5	내홍동 1076-3	283.0	
			-6	내홍동 1076-2	283.0	
E	35	2,179.3	-1	내홍동 1077-1	245.3	
			-2	내홍동 1077-8	269.9	
			-3	내홍동 1077-7	269.9	
			-4	내홍동 1077-6	269.9	
			-5	내홍동 1077-5	269.9	
			-6	내홍동 1077-4	269.9	
			-7	내홍동 1077-3	269.9	
			-8	내홍동 1077-2	314.6	
E	36	1,685.8	-1	내홍동 1078-1	283.0	
			-2	내홍동 1078-6	283.0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E	37	1,373.9	-3	내홍동 1078-5	276.9	
			-4	내홍동 1078-4	276.9	
			-5	내홍동 1078-3	283.0	
			-6	내홍동 1078-2	283.0	
			-1	내홍동 1082-1	276.0	
			-2	내홍동 1082-2	276.0	
			-3	내홍동 1082-3	276.0	
			-4	내홍동 1082-4	276.0	
			-5	내홍동 1082-5	269.9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위치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기정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345,799.8	감)30.0	345,769.8	-	345,799.8	감)30.0	345,769.8	분할·합병 불허 단, 공동 주택지 내 부대복리 시설 (근린생활 시설)은 획지분할 가능
A	1	31,683.0	-	31,683.0	내홍동 1018	31,683.0	-	31,683.0	
	2	29,646.7	-	29,646.7	내홍동 927	29,646.7	-	29,646.7	
	3	38,956.6	-	38,956.6	내홍동 1017	38,956.6	-	38,956.6	
B	1	55,290.0	-	55,290.0	내홍동 1065	55,290.0	-	55,290.0	
	2	53,608.3	감)30.0	53,578.3	내홍동 926	53,608.3	감)30.0	53,578.3	
	3	61,429.5	-	61,429.5	내홍동 925	61,429.5	-	61,429.5	
D	1	35,038.6	-	35,038.6	내홍동 1019	35,038.6	-	35,038.6	
	2	40,147.1	-	40,147.1	내홍동 924	40,147.1	-	40,147.1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23,636.9	-	-	23,636.9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 내 합병 허용
F	1	2,178.9	-1	내홍동 993-1	432.5	
			-2	내홍동 993-2	432.5	
			-3	내홍동 993-3	432.4	
			-4	내홍동 993-4	432.4	
			-5	내홍동 993-5	449.1	
F	2	744.4	-1	내홍동 994	744.4	
F	3	1,319.1	-1	내홍동 999-2	439.3	
			-2	내홍동 999-3	439.6	
			-3	내홍동 999-4	440.2	
F	4	1,924.1	-1	내홍동 1000-1	484.3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2	내홍동 1000-2	484.2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 내 합병 허용
			-3	내홍동 1000-3	484.2	
			-4	내홍동 1000-4	471.4	
F	5	1,875.8	-1	내홍동 1001-1	463.4	
			-2	내홍동 1001-2	475.7	
			-3	내홍동 1001-3	475.9	
			-4	내홍동 1001-4	460.8	
F	6	2,886.0	-1	내홍동 1002-1	470.3	
			-2	내홍동 1002-2	485.8	
			-3	내홍동 1002-3	486.1	
			-4	내홍동 1002-4	486.1	
			-5	내홍동 1002-5	486.3	
			-6	내홍동 1002-6	471.4	
F	7	1,933.3	-1	내홍동 917- 1	633.7	
			-2	내홍동 917- 2	652.4	
			-3	내홍동 917- 3	647.2	
F	8	1,605.9	-1	내홍동 917- 6	524.5	
			-2	내홍동 917- 5	543.3	
			-3	내홍동 917- 4	538.1	
F	9	2,624.5	-1	내홍동 1052-1	517.9	
			-2	내홍동 1052-2	530.2	
			-3	내홍동 1052-3	530.5	
			-4	내홍동 1052-4	530.2	
			-5	내홍동 1052-5	515.7	
F	10	2,098.4	-1	내홍동 1058-1	530.1	
			-2	내홍동 1058-2	530.3	
			-3	내홍동 1058-3	530.1	
			-4	내홍동 1058-4	507.9	
F	11	2,177.8	-1	내홍동 1080-1	436.8	
			-2	내홍동 1080-2	430.0	
			-3	내홍동 1080-3	430.0	
			-4	내홍동 1080-4	430.0	
			-5	내홍동 1080-5	451.0	
F	12	2,268.7	-1	내홍동 1081-1	442.0	
			-2	내홍동 1081-2	457.0	
			-3	내홍동 1081-3	457.0	
			-4	내홍동 1081-4	457.0	
			-5	내홍동 1081-5	455.7	

##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83,239.5	-	-	83,239.5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내 합병 허용
G	1	4,468.1	-1	내홍동 1023-1	1,218.5	
			-2	내홍동 1023-2	1,085.4	
			-3	내홍동 1023-3	1,084.3	
			-4	내홍동 1023-4	1,079.9	
G	2	3,341.2	-1	내홍동 1026-1	836.4	
			-2	내홍동 1026-2	835.0	
			-3	내홍동 1026-3	834.8	
			-4	내홍동 1026-4	835.0	
G	3	4,363.3	-1	내홍동 1025-1	1,015.1	
			-2	내홍동 1025-2	1,264.3	
			-3	내홍동 1025-3	2,083.9	
G	4	2,651.1	-1	내홍동 1028-1	908.5	
			-2	내홍동 1028-2	879.6	
			-3	내홍동 1028-3	863.0	
G	5	3,397.1	-1	내홍동 909- 1	1,185.3	
			-2	내홍동 909- 2	1,107.0	
			-3	내홍동 909- 3	1,104.8	
G	6	1,465.4	-1	내홍동 910	1,465.4	
G	7	4,862.2	-1	내홍동 909- 4	1,243.3	
			-2	내홍동 909- 5	1,232.8	
			-3	내홍동 909- 6	2,386.1	
G	8	2,181.2	-1	내홍동 911- 1	951.5	
			-2	내홍동 911- 3	629.4	
			-3	내홍동 911- 2	600.3	
G	9	1,517.0	-1	내홍동 912- 2	766.8	
			-2	내홍동 912- 3	750.2	
G	10	3,600.9	-1	내홍동 913- 1	947.6	
			-2	내홍동 913- 2	917.9	
			-3	내홍동 913- 3	888.0	
			-4	내홍동 913- 4	847.4	
G	11	3,627.6	-1	내홍동 1029-1	954.9	
			-2	내홍동 1029-2	857.8	
			-3	내홍동 1029-3	892.4	
			-4	내홍동 1029-4	922.5	
G	12	2,829.4	-1	내홍동 1030-1	948.8	
			-2	내홍동 1030-2	948.2	
			-3	내홍동 1030-3	932.4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G	13	2,145.9	-1	내홍동 1032-1	1,081.1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내 합병 허용
			-2	내홍동 1032-2	1,064.8	
G	14	2,495.3	-1	내홍동 1036-1	1,200.6	
			-2	내홍동 1036-3	654.8	
			-3	내홍동 1036-2	639.9	
G	15	3,986.6	-1	내홍동 1031-1	954.8	
			-2	내홍동 1031-2	979.3	
			-3	내홍동 1031-3	1,030.3	
			-4	내홍동 1031-4	1,022.2	
G	16	2,116.9	-1	내홍동 1033-1	1,063.9	
			-2	내홍동 1033-2	1,053.0	
G	17	2,495.2	-1	내홍동 1038-1	1,201.0	
			-2	내홍동 1038-3	638.7	
			-3	내홍동 1038-2	655.5	
G	18	3,622.2	-1	내홍동 1039-1	982.3	
			-2	내홍동 1039-2	880.1	
			-3	내홍동 1039-3	879.9	
			-4	내홍동 1039-4	879.9	
G	19	2,706.0	-1	내홍동 1040-1	903.6	
			-2	내홍동 1040-2	903.7	
			-3	내홍동 1040-3	898.7	
G	20	4,060.6	-1	내홍동 1041-1	1,033.2	
			-2	내홍동 1041-2	1,062.5	
			-3	내홍동 1041-3	1,000.0	
			-4	내홍동 1041-4	964.9	
G	21	3,976.0	-1	내홍동 1042-1	943.1	
			-2	내홍동 1042-2	976.6	
			-3	내홍동 1042-3	1,038.9	
			-4	내홍동 1042-4	1,017.4	
G	22	4,755.9	-1	내홍동 1048-1	1,128.4	
			-2	내홍동 1048-2	1,177.1	
			-3	내홍동 1048-3	1,209.4	
			-4	내홍동 1048-4	1,241.0	
G	23	3,986.6	-1	내홍동 1046-1	1,027.9	
			-2	내홍동 1046-2	1,030.1	
			-3	내홍동 1046-3	977.0	
			-4	내홍동 1046-4	951.6	
G	24	3,435.6	-1	내홍동 1045-1	863.6	
			-2	내홍동 1045-4	854.3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G	25	5,152.2	-3	내홍동 1045-3	854.6	
			-4	내홍동 1045-2	863.1	
			-1	내홍동 1050-1	1,685.0	
			-2	내홍동 1050-2	1,740.5	
			-3	내홍동 1050-3	1,726.7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위치	면적(m <sup>2</sup> )	
합계		9,921.2	-	9,921.2	
H	1	3,021.5	내홍동 1016-2	3,021.5	
	2	1,103.9	내홍동 1015-2	1,103.9	
	3	3,794.8	내홍동 1016-1	3,794.8	
	4	2,001.0	내홍동 1015-1	2,001.0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합계		6,211.7	-	-	6,211.7	분할 불허, 연접합 획지 내 합병 허용
I	1	3,055.3	-1	내홍동 1043-1	997.5	
			-2	내홍동 1043-2	1,041.6	
			-3	내홍동 1043-3	1,016.2	
	2	3,156.4	-1	내홍동 1047-1	1,050.1	
			-2	내홍동 1047-2	1,065.5	
			-3	내홍동 1047-3	1,040.8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위치	면적(m <sup>2</sup> )	
합계		5,000.8	-	5,000.8	
J	2	5,000.8	내홍동 1059	5,000.8	

8)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37,573.8	-	37,573.8	
K	1	9,401.0	내홍동 998	9,401.0	초등학교
	2	15,001.6	내홍동 1063	15,001.6	
	3	13,171.2	내홍동 1060	13,171.2	중학교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2,058.0	-	2,058.0	
L	1	1,041.0	내홍동 982	1,041.0	
	2	1,017.0	내홍동 1068	1,017.0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699.5	-	699.5	
O	1	699.5	내홍동 923	699.5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13,023.5	-	13,023.5	노외 주차장
P	1	1,031.6	내홍동 1007	1,031.6	
	2	1,358.5	내홍동 1027	1,358.5	
	3	1,794.7	내홍동 912-1	1,794.7	
	4	1,927.5	내홍동 1034	1,927.5	
	5	1,930.0	내홍동 1035	1,930.0	
	6	3,430.8	내홍동 1044	3,430.8	
	7	515.4	내홍동 1057	515.4	
	8	550.3	내홍동 1070	550.3	
	9	484.7	내홍동 989	484.7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908.1	-	908.1	
Q	1	908.1	내홍동978	908.1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점포겸용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6 ~ E9, E14 ~ E16, E25 ~ E28	E6 ~ E9, E14 ~ E16, E25 ~ E28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점포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li> <li>-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및 1층에 한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이 주거용도일 경우 허용</li> <li>- 지하층의 허용층수는 지하 1층에 한하며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필로티구조를 포함함】
		배 치	-
		가구수	· 1획지당 5가구 이하(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3가구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2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li> <li>·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 이상),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이내 허용</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 : 2GY-10BG를 사용하고 명도 7~9, 채도 3이하 권장</li> <li>· 구조색 : 2YR-10YR로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li> <li>· 보조색 : 10YR-8Y로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6 권장</li> <li>· 강조색 : 2YR-10GY로 사용하고 명도 4~6, 채도 6~10 권장</li> </ul>
건축선	-		

○ 일반주택(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 E5, E10 ~ E13, E17 ~ E24, E29 ~ E37	E1 ~ E5, E10 ~ E13, E17 ~ E24, E29 ~ E37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li> <li>- 지하층의 허용층수는 지하 1층에 한하며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li> <li>· 불허용도</li>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3층 이하 <b>【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필로티구조를 포함함】</b>
		배 치	-
		가구수	· 1획지당 5가구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2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li> <li>·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 이상),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이내 허용</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 : 2GY-10.0BG를 사용하고 명도 7~9, 채도 3이하 권장</li> <li>· 구조색 : 2YR-10YR로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li> <li>· 보조색 : 10YR-8Y로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6 권장</li> <li>· 강조색 : 2YR-10GY로 사용하고 명도 4~6, 채도 6~10 권장</li> </ul>
건축선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A1BL~ A3BL, B1BL~ 3BL, D1BL~ D2BL	A1BL~ A3BL, B1BL~ 3BL, D1BL~ D2B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li> <li>· 불허용도</li>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이하</li> </ul>
		용적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2BL A3BL : 160%이하</li> <li>· A1BL, B1BL, B2BL, B3BL : 180%이하</li> <li>· D1BL, D2BL : 200%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층 이하(단, 조경면적 의무비율(40~50%)초과 시 25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법, 건축조례 등 관련법규 준수</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의 길이 : 80m 이하</li> <li>· 아파트의 지붕 : 경사지붕이 원칙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거나 조형적인 옥탑디자인, 옥상조경을 한 경우는 예외.</li> <li>·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고, 높은 계층의 원색은 지양</li> <li>· 주조색 : 5YR-5PB, 명도 8이상, 채도 3이하</li> <li>· 보조색 : 5YR-5PB, 명도 5~8, 채도 2~8</li> <li>·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유형에 관계없이 선택가능, 명도 3~6, 채도 2~8</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li> <li>- 6~12m(도면 참고)</li> <li>· 직각배치구간</li> <li>- 16~25m(건축한계선 포함, 도면 참고)</li> <li>· 단,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대해서만 적용(지하부는 미적용)</li> </ul>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F1~12	F1~1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li> <li>· 불허용도</li> <li>- 주거용도</li>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이상, 5층 이하</li> </ul>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li> <li>·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li> <li>· 대문 설치 불허</li> <li>·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4~10 권장</li> <li>· 구조색 :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9이상, 채도 2이하 권장</li> <li>· 보조색 : 8YR-8Y, 5PB-10PB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li> <li>· 강조색 : 2YR-10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 1~2m(도면 참고)</li> </ul>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G10	G1~G10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G1, G2, G3, G4, G5, G6, G7-1, G7-2, G8, G9에서만 허용</li> <li>· 불허용도</li>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다른 숙박시설(G7-3, G10)</li> </ul>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560%이하
		높이	· 2층 이상, 7층 이하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li> <li>·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li> <li>·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불허</li> <li>· 대문 설치 불허</li> <li>·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li> <li>· 구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li> <li>·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li> <li>·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li> </ul>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1~G20	G11~G20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G11, G12, G13, G14, G16, G17에서만 허용</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G15, G18, G19, G20)</li> </ul> </li> </ul>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1,000%이하
		높이	· 2층 이상, 15층 이하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li> <li>·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li> <li>·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불허</li> <li>· 대문 설치 불허</li> <li>·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li> <li>· 주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li> <li>·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li> <li>·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li> </ul>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21, G23, G24	G21, G23, G2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G24에서만 허용</li> <li>· 불허용도</li>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G21, G23)</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이하</li> </ul>
		높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이상, 10층 이하</li> </ul>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li> <li>·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li> <li>·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li> <li>· 대문 설치 불허</li> <li>·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li> <li>· 구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li> <li>·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li> <li>·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li> </ul>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22, G25	G22, G2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li> </ul> </li> </ul>
		건폐율	· 80%이하
		용적율	· 480%이하
		높이	· 2층 이상, 6층 이하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li> <li>·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3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li> <li>·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불허</li> <li>· 대문 설치 불허</li> <li>· 인접대지와 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li> <li>· 구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li> <li>·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li> <li>·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li> </ul>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H1~H4	H1~H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과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그 부속용도</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6층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 참고)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I1, I2	I1, I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과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목의 요양병원 및 그 부속용도</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2층 이상, 10층 이하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li>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li> <li>·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li> <li>·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li> <li>· 대문 설치 불허</li> <li>·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li> </ul>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J2	J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에 따른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 8) 학교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K1~K3	K1~K3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속용도</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li> <li>· 건축한계선은 수업을 위한 교사(체육관 등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교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소음기준치 55dB이하가 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기준치 이하로 낮출 경우에 한하여 직각배치 및 도로변 건축한계선 제외</li> </ul>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1, L2	L1, L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및 그 부속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소유자시설 및 그 부속용도</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O1	O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 하수도시설</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1m(지하부 미적용)(도면 참고)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P1~P9	P1~P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2~P6 : 560%이하</li> <li>· P1, P7~ P9 : 320%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2~P6 : 7층 이하</li> <li>· P1, P7~P9 : 4층 이하</li> </ul>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1.5m(도면 참고)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Q1	Q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에 따른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도면 참고)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의 진출입	공통	·차량 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 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상의 차량진출입 관련사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준수  ·공동주택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	주차장 설치	공통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사항 중 강화된 규정 적용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1) 교통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스쿨존 지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학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및 조성
- 기타 지구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에  
따른 교통계획을 준수토록 함

(2)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 주간선 및 보조간선, 집산도로에서는 출입을 불허하고 국지도로 및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도면을 참조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보도연계형공지

- 대지안에서 보도와의 경계에 접한 부분에 보행 등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 폭의  
공개공지 조성
-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썸지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보도 연계형 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 보도 연계형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

(2) 공공공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에서 공공공지의 설치위치가 표시된 필지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 일반사항

- 군산시 고시 제2009-75호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 중 특정구역(수송택지지구)의 기준에 따름

## 4) 경관계획(변경없음)

## (1) 기본방향

- 주변 단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부한 녹음이 있는 주거 환경조성
- 외부의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 도심형 거리 풍경을 연출
-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문화를 창출

## (2) 지구 경관계획

-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동 개발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지구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상업동및 업무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 시설로 계획

##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 「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사업에 관련된 제영향평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③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위치도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22-2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7.

군 산 시 장



- 1. 사업명 : 군산 신역세권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케이디(주)
  - 나. 대표자 : 안태일
  - 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6-3호 (고잔동, 대우빌딩)
-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926번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53,578.3m<sup>2</sup>
  - 라. 건축면적 : 7,727.2698m<sup>2</sup>(건폐율 : 14.42%)
  - 마. 연면적 : 140,308.8132m<sup>2</sup> (용적율 : 179.85%)

바.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25층 /아파트 6개동 외, 878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878				
75A	민영주택	99	75.9568	22.8020	98.7588	
75B	민영주택	50	75.9719	22.8385	98.8104	
84A	민영주택	448	84.3001	25.3744	109.6745	
84B	민영주택	281	84.8374	25.6785	110.5159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305,088,931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9월 1일

4.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승인일 : 2022.02.14.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28호

#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조촌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조촌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 2. 18.

군 산 시 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	조촌택지개발 사업지구	군산시 조촌동 75-7번지 일원	183,164.1	감) 1,055.5	182,108.6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7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909번지 일원	8,788.7	증) 0.5	8,789.2	전북고7 (‘94.1.11)	위치 이동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sup>2</sup> )	
31	31BL	1,511.7	909-1잡	1,511.7	금회 신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31	31BL	용 도	업무시설	금회 신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건축선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22-30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지곡동 일원 기반시설계획 등 계획적 개발방향 수립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군 산 시 장



### 1. 제한지역

- 위 치 : 전북 군산시 지곡동, 옥산면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일원
- 면 적 : 496,650m<sup>2</sup>

### 2. 제한사유

- 군산시 지곡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기반시설계획 등 수립시 해제)

### 4. 공람장소

-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02, Fax. 063-452-8171)

### 5.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6.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일(2021.12.27.)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허가·신고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창고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원안수용, 조건부수용으로 결정된 토지의 형질변경

### 7. 기타

-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063-454-3502)에 비치되어 있으며, 토지이음([www.eum.go.kr](http://www.eum.go.kr)) 또는 군산시청([www.gunsan.go.kr](http://www.gunsa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3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2, 소로2-217, 소로3-218호선)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 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25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2	30	보조 간선도로	1,746	경암동 대2-4	대1-21	일반 도로	4토지 구획	건고525 ('67.7.25)	
변경	대로	2	2	30~31	보조 간선도로	1,746	경암동 대2-4	대1-21	일반 도로	4토지 구획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217	8	국지 도로	160	경장동513-1 대로1-3	경장동503-12 대로2-2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변경	소로	2	217	8~11	국지 도로	160	경장동513-1 대로1-3	경장동503-12 대로2-2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기정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578	경장동513-5 대로2-2	경장동491-1 대로3-6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변경	소로	3	218	6~7	국지 도로	578	경장동513-5 대로2-2	경장동491-1 대로3-6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대로 2-2	대로 2-2	• 일부구간(L=50m) 폭원확장 및 선형개선 - B=30m → 30m~31m(증 1m)	• 경암동 주상복합용지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소로 2-217	소로 2-217	• 일부구간(L=48m) 폭원확장 - B=8m → 8m~11m(증 3m)	• 경암동 주상복합용지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소로 3-218	소로 3-218	• 일부구간(L=47m) 폭원확장 - B=6m → 6m~7m(증 1m)	• 경암동 주상복합용지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316호

##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옥산면 청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군산시 공고 제2021 - 1944호(2021. 10. 7.)로 열람 공고한 『옥산면 청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분할측량결과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재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7.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공사명 및 사업구간

사업명	사업구간	규 모	사업기간	비고
옥산면 청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5번지 일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L=160m, B=9m	2021 ~ 2022	변동 없음

3. 재공고 사유 :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4.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5.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2. 2. 12. ~ 2022. 3. 1.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건설과(☎ 063-454-3583)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7.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요청하여야 함.

8. 시·도시사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3	답	2,371	3	군산시					
2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77	도	363	26	군산시					
3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818-7	도	4,896	148	국(농림 축산식 품부)					
4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산262	도	397	249	군산시					
5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산261-4	임	75	71	군산시					
6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76	도	10	10	군산시					
7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72	도	205	6	군산시					
8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79	유	239	128	군산시					
9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77	유	221	182	군산시					
10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81	유	138	3	군산시					
11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56	구	1,170	683	군산시					
12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58-2 (758)	답	40 (1,321)	40 (38)	김진*	충남 서천군 마산면 지산리 41*-2				변경
						김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47*번길 3				
13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60-1	답	22	11	군산시					
14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58-1	답	233	31	군산시					

297mm×210mm[백상지 80g/㎡]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장물)

- 옥산면 청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지장물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	옥산	옥산	산262	도	소나무		1	주	군산시					
						감나무		2	주						
2				756	구	창고	철파이 프조판 넬지붕	112.0	m <sup>2</sup>	김선*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6*				변경
		감나무				37	주								
		호두나무				5	주								
		동산 이전비	소형보트 PP			1	식								
3				758-2 (758)	답	소나무		32	주	김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47*번길 3				변경
		단풍나무				25	주								
		단풍나무	묘목			10	주								
		느티나무				20	주								
		사철				1	m								
4				758-1	답	컨테이너	3*6	1	식	김재*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5*				

##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2 - 2호

## 공공하수도신시도, 무녀도 마을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군산시 공공하수도(신시도, 무녀도 마을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군 산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 2022년 2월 17일
2. 사용개시 공공하수도 내역

구 분	신시도	무녀도	비 고
명 칭	신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무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 치	군산시 옥도면신시도리 산17-1	군산시 옥도면무녀도리 223-11	
처리구역 면적	0.09km <sup>2</sup>	0.16km <sup>2</sup>	
하수처리 구역	신시도	무녀1구, 무녀2구	
하수처리 용량	120m <sup>3</sup> /일	150m <sup>3</sup> /일	
하수처리 방식	선회와류식 SBR공법	선회와류식 SBR공법	
하수배제 방식	분류식	분류식	
방 류 수 역	서해	서해	
설계 수질 (방류)	BOD	3.5 mg/ℓ	3.5 mg/ℓ
	COD	13.5 mg/ℓ	13.5 mg/ℓ
	SS	3.5 mg/ℓ	3.5 mg/ℓ
	T-N	11.0 mg/ℓ	11.5 mg/ℓ
	T-P	1.5 mg/ℓ	1.5 mg/ℓ
	대장균	200 개/mL	200 개/mL

3. 관계도면을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하수과(☎063-454-5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2 - 5호

##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6.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군산시장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 나. 명 칭 :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3. 사업예정지

- 가. 위 치 : 군산시 성산면 둔덕, 고봉, 도암 여방리 일원
- 나. 면적(하수처리시설) : 붙임참조

**4.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가. 예정배수구역 : 8.468km<sup>2</sup>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 1.57km<sup>2</sup>

**5.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1기(Q=1,000m<sup>3</sup>/일), 오수관로 L=40.6Km, 배수설비 850가구

**6. 열람기간 및 장소, 의견서 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 2022. 2. 16. ~ 2022. 3. 3.(15일간)

나. 열람장소 :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다.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063-454-5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